

인재개발혁신사업추진단 운영규정

제정 2016. 07. 2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생학습역량강화, 진로 및 심리상담, 취·창업 지원,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및 환류시스템 구축, 교육과정개선평가를 통한 재학생의 취·창업 실적 제고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재개발혁신사업추진단(이하 “추진단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제1조에서 언급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생학습역량강화는 상지스터디그룹 등과 같은 비교과 학습프로그램 및 장·단기 해외연수와 같은 정규교과목 이외 학생의 학습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의미한다.
2. 진로 및 심리상담은 학년별 맞춤형 직업심리검사, 진로상담, 입사서류 클리닉, 취업상담 등과 같은 재학생의 향후 진로설정을 위한 프로그램 및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신건강 심리검사와 대인관계능력개선 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의미한다.
3. 취·창업 지원은 인턴십 지원, 각종 채용박람회유치 및 운영, 취·창업 동아리 지원, 취업특강, 창업특강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의미한다.
4.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및 환류시스템 구축은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인 학생에 대해 다양한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분석·평가하여 차년도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.
5. 교육과정개선평가는 정규 교과목에 대해 강의평가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해당 교과목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.

제3조(기능) 추진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생학습역량강화, 진로 및 심리상담, 취·창업지원, 교육수요자만족도 관리 및 환류시스템 구축, 교육과정개선평가 기본계획 수립
2. 제 1호와 관련된 제반 운영프로그램의 추진사항 점검 및 관리
3.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제반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 및 환류시스템 구축
4. 실행 부서 간 업무조정
5. 기타 위와 관련된 사항

제4조(구성 및 임기) ① 추진단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추진단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부총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지원처장, 특성화기초대학장, 취업지원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실무부서의 부장 또는 팀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③ 추진단의 업무는 기획예산부에서 관장하며 담당업무별 직원으로 간사를 선임하고 서기를 둘 수 있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) 제3조 1항에서 수립된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관련부서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6조(회의) ① 추진단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

- ② 추진단 위원장은 제3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요구가 있을 때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.
- ③ 추진단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자료제출 의무) ①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부서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부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조사 및 연구의뢰)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문가,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9조(성과분석) 제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결과는 평가 후 개선 사항을 차기년도 기본계획에 반영한다.

부칙(기획예산부-591, 2016.07.26.)

이 규정은 2016년 0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